면책조항과 불공정계약조건법 1977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플랫폼 약관에는 광범위한 책임 면제 및 제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영국 법률을 재입법한 싱가포르의 불공정계약조건법(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UCTA)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를 통제합니다.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책임은 면제할 수 없으며, 과실로 인한 그 밖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조항이 합리적인 경우에만 면제할 수 있습니다.[1] 일방 당사자가 소비자로서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서면 표준거래약관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조항이 합리적인 범위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기대되었던 것과 실질적으로 다른 급부를 제공할 권리를 주장하는 조항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2] 합리성은 s 11과 제2부칙(Second Schedule)의 지침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상대적 교섭력, 고객이 해당 조항 없이 다른 곳에서 계약할 수 있었는지, 고객이 그 조항을 알고 있었는지,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주문에 맞추어 조정되었는지를 고려합니다.[3]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거래소 약관에서 취약한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howsoever caused)' 고객 자산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플랫폼 자신의 과실에 적용될 때에는 합리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리테일 고객을 상대로는 통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이 '단독 재량으로' 계정을 정지, 동결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기대되었던 것과 실질적으로 다른 급부를 제공할 권리의 주장으로서 s 3(2)(b)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 변동성이 클 때의 서비스 중단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그때가 바로 고객이 가장 거래를 필요로 하는 순간입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개인에게 부과된 표준약관에 대해서는 이 법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해 온 반면,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는 상인 간에는 더 넓은 재량을 인정해 왔습니다.[4]

약관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라고 해서 플랫폼이 이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27은 외국법의 선택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이 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강요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러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고객이 소비자로서 거래하였고, 싱가포르에 상거소를 두고 있었으며, 계약 체결에 필요한 핵심 절차를 싱가포르에서 밟은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5]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온라인으로 계정을 개설한 싱가포르 거주 리테일 고객은 역외 거래소의 면책조항에 대하여 이 법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거래소를 싱가포르 법원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주

1.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s 2. ↩
2.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s 3. ↩
3.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s 11 및 Second Schedule. ↩
4. *Kenwell & Co Pte Ltd v Southern Ocean Shipbuilding Co Pte Ltd* [1998] SGHC 316 및 싱가포르에서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s 11을 표준약관상의 면책조항에 적용한 이후의 판례들.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5.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s 27(2).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